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	----

제출년월일 : '96. 4. 30.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각종법령의 개폐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개정전 30개항목중 개별조례에 규정된 2개항목과 업무기능상 불필요한 13개항목, 총 15개항목을 삭제하고 개별조례등에 규정되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한 3개항목을 신설하여 개정후 심의결정사항은 18개항목
-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안 제3조)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국유재산, 지방재산의 대부심사와 도급계약 심의및 군납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7.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10.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절약대책중 중요한 사항
 1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13.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 전산화에 관한 사항
 16.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17.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8.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국유재산, 지방재산의 대부심사와 도급계약 심의 및 군납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7.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10.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절약대책중 중요한 사항
1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13.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 전산화에 관한 사항
16.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17.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8.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실,과) 직제순에 의한 국(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 제12호 및 제15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실,과) 직제순에 의한 국(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 지방재산의 대부심사와 도급 계약심의 및 군납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기획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8.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9. 삭제 <94.6.16> 10.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11.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14.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15. 국무총리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
16.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 재산 심의	9. 현행과 같음
17. 품질관리를 정착키 위한 조사연구협의회 사항	삭제
18. 삭제 <94.6.16>	삭제
19.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준칙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삭제
20. 공무원 제안제도에 운영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21. 삭제 <94.6.16>	삭제
22.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삭제
23. 지방행정조정에 관한 사항	삭제
24. 공업용지 조정심의에 관한 사항	삭제
25. 생활향상에 관한 사항	삭제
26. 삭제 <94.6.16>	삭제
27. 삭제 <94.6.16>	삭제
28. 에너지절약대책중 중요한 사항	11. 현행과 같음
29. 환지심사에 관한 사항	삭제
30.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삭제
3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
32. 부산광역시사하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33.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방문에 관한 사항 신설	13. 현행과 같음
신설	14. 부산광역시사하구 복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신설	15. 부산광역시사하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전산화에 관한 사항
34.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할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6.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5.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17.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